

2017년 1.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·공시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개별주택가격의 결정·공시

- 공시기준일 : 2017년 1월 1일
- 공시대상 : 15,600호
- 공시사항 : 개별주택가격(토지·건물 일체가격)
- 공시방법 : 군 공보지, 군 홈페이지, 지역일간지, 읍·면사무소 게시판 등

2. 이의신청

- 제출기간 : 2017년 4월 28일 ~ 5월 29일
- 제출자 :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- 제출장소 :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·면사무소, 군 홈페이지
- 제출방법
 - 서면 :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·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, 팩스·우편 접수 가능
 - 인터넷 : 군 홈페이지(토지건축정보 → 개별주택가격 → 이의신청)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

3.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

-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,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

4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(☎055)880-2275) 및 읍·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2017년 4월 28일

하 동 군 수